

#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096호, 2016. 3. 22. 공포) 및 「동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892호, 2019. 6. 25. 공포, 2019. 9. 16. 시행)이 각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공탁규칙의 유가증권공탁 관련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유가증권공탁 절차에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(안 제6조제3항)

## 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유가증권공탁”을 “유가증권(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공탁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건부)</p> <p>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,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.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“금”으로, <u>유가증권공탁은 “증”으로, 물품공탁은 “물”로 하고,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.</u></p>	<p>제6조(사건부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유가증권</u> <u>(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공탁</u>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77